

성남하이테크밸리 복합문화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

성남기업·근로자·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‘성남하이테크밸리 복합문화센터’에서 산업단지 활성화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보육&네트워크라운지 입주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6년 8월 28일
성남산업진흥원 원장

1 센터개요

【 성남하이테크밸리 복합문화센터 】

설립일	2026. 4월
위 치	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245, 4층 (성남아이파크디어반)
전용면적	총면적 904.91㎡ 중 입주공간 386.74㎡
공간구성 (보육규모)	· 개방형 입주공간 23석(1, 2, 4인석) / 10개사 이내 · 회의실, 공유부엌, 다목적교육장, 전시·홍보·이벤트실, 휴게공간 등
이용시간	월 ~ 금(09시 ~ 18시) ※ 주말 및 법정 공휴일 센터 이용 불가
비 고	입주공간은 ‘입주기업’과 ‘데이패스 회원’이 함께 사용하는 개방형 공용업무공간 ※데이패스 회원: 이용 당일 출입등록 후 해당 공간을 이용하는 성남시 관내 근로자 및 청년
입주공간 전경	 

2

모집개요

- ☐ **모집대상:** (공고일 기준) 창업 3년 이내 (예비)창업기업
- ☐ **모집분야:** IT기반 첨단기술 및 지식 서비스업 산업 등
- ☐ **모집규모:** 총 10개사 내외

센터명	개방형	
성남하이테크밸리 복합문화센터 (창업보육&네트워크라운지)	10개사	1~4인석

※ 선정기업의 좌석 규모 및 센터 운영 상황에 따라 최종 선정 규모 다소 변동 가능

※ 접수 미달 혹은 심사 후 적격 기업이 없을 경우 추가모집 가능

- ☐ **모집기간:** ~ 2026. 9. 16(수), 12시까지

※ 유의사항

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**마감일 1일 전까지 '성남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가입 및 사업신청'**을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리며 마감시간 30분 전까지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

신청자격 및 요건

☐ 신청자격

구 분	신청자격	비 고
예 비 창업자	▶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(개인/법인)이 되어 있지 않은 자 ※ 입주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	『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2호』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(기업) ※ 첨부문서 참조
창업기업 (개인/법인)	▶ (공고일 기준) 창업 3년 이내 기업 - 개인기업 : 사업자등록증명상 '개업연월일' 기준 - 법인기업 : 법인등기부등본상 '회사성립연월일' 기준 ▶ IT기반 첨단기술 및 지식 서비스 산업 등	
지 원 "제외"대상	▶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(기업) ▶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(기업) ▶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, 기관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(기업) ▶ 숙박업, 임대업, 유흥업, 자영업 등 단순 서비스 업종	

□ 입주요건

구 분	내 용						
입주기간	2026. 10. 19. ~ 2027. 10. 18. (1년) ※ 입주 연장 평가 후, 평가 결과에 따라 1회(1년) 연장 가능 ※ 입주기간은 입주 절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						
입 주 비	<table><tr><th>센터명</th><th colspan="2">입주보증금</th></tr><tr><td>성남하이테크밸리 복합문화센터</td><td>창업보육&네트워크라운지</td><td>좌석당 20만원</td></tr></table> ※ 입주보증금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함	센터명	입주보증금		성남하이테크밸리 복합문화센터	창업보육&네트워크라운지	좌석당 20만원
센터명	입주보증금						
성남하이테크밸리 복합문화센터	창업보육&네트워크라운지	좌석당 20만원					
기 타	○ 성남하이테크밸리 복합문화센터 운영지침(별도 배포 예정) 준수 의무 • 입주 및 지원 : 입주 선정평가, 입주기간 및 연장, 입주승인 취소 등 • 행위제한 및 퇴거 • 센터 시설물 관리, 실태조사 및 입주자 관리 등 ※ 계약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성남하이테크밸리 복합문화센터를 본사로 사업자 등록 ※ 계약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계약한 입주 공간(좌석)의 근무인원 확보 ※ 입주기업은 월 평일 기준 12일 이상 공간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퇴거될 수 있음						

4

선정절차 및 방법

□ 접수 및 선정절차

구 분	시 기	내 용
공 고	'26. 8월 5주차	· 진흥원 홈페이지 등
접 수	공고일 ~ '26. 9. 16, 12시	·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
서류평가 일정	'26. 9월 3~4주차	· 이메일 결과 안내
발표평가 일정	'26. 9월 말~10월 초	· PT형식 발표평가 진행
최종 선정기업 안내	'26. 10월 초	· 이메일 결과 안내(선정,미선정)
상호대차 계약체결	'26. 10월 중 (입주 '26. 10월 중)	· 최종 선정기업 계약체결

* 단,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, 모집결과에 따라 서류평가 생략 가능

- ☐ **서류평가:**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평가
- ☐ **발표평가:** 서류평가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발표(대면)평가
- ☐ **평가기준:** 창업자 및 팀 역량, 기술력, 사업성 및 시장성, 입주타당성 등
- ☐ **결과통보:** (선정, 미선정팀) 개별 통보
- ☐ **가점사항**

■ **가점사항은 고득점 순으로 최대 1개 반영(정량):** 서류평가 시 평가위원 합계 점수에 가산

① 벤처기업인증 획득기업 (5점) * 유효기간 내에만 인정

② TIPS, 투자유치 등 실적 우수 기업

- 중기부 TIPS 선정 기업 (7점)
- 투자유치 실적(건당 1억원 이상/최근 3년 이내) 보유기업 (5점) *보증·용자 제외
- 투자유치 실적(건당 3천만원 이상/최근 3년 이내) 보유기업 (3점) *보증·용자 제외

* 중복 가점 불가하며 고득점순으로 최대 1개만 인정

** 증빙(인증 확인서, 선정 공문, 협약서, 투자계약서 등) 미제출 시 미인정

*** 서류평가 시 심사위원 합산 점수에 가산 반영(서류평가 생략 시 발표평가에 반영)

5

접수방법 및 제출서류

- ☐ **접수마감:** ~ 2026. 9. 16(수), 12:00 까지
- ☐ **접수방법:** 성남산업진흥원 홈페이지(www.snip.or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

신청시 유의사항

- 하단 표의 “제출서류” 중 ① ~ ⑧ 서류를 순서대로 1개의 PDF파일로 생성
- 파일명 = “기업명”으로 설정
- ※ 모아찍기 설정 등 인쇄방식 변경 불가

*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기재사항에 대한 오기재, 허위기재, 구비서류 미제출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제출서류

제출 서류(업로드)		법인기업	개인기업	예비창업자	
				창업경험有	창업경험無
①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, 개인정보 동의서(지정양식)		○	○	○	
② 사업자등록증(사업자등록증명원)		○	○	x	
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		○	x	x	
④ 국세, 지방세 납세 증명서(유효기간內)		○	○	○ (개인 납세 증명)	
⑤ 4대 보험 가입자 명부(공고일 이후 발급)		○	○	x	
⑥ 사실증명*	가. 사업자등록사실여부	x	x	x	○
	나. 총사업자등록내역	○	○	○	x
⑦ 가점사항(해당 기업에 한해 제출)		○	○	x	
⑧ 인증, 지식재산권 증빙서류(보유시)		○	○	○	

【 발급경로 안내 】

- 사업자등록증명원 : (홈택스) <https://www.hometax.go.kr>
-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: (인터넷등기소) <http://www.iros.go.kr/>
- 국세, 지방세 납세증명
 - 국 세 : (홈택스) <https://www.hometax.go.kr>
 - 지방세 : (정부24) <https://www.gov.kr>
-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(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) <https://www.4insure.or.kr>
- 사실증명 : (홈택스) <https://www.hometax.go.kr>
 - 발급방법 : 「국세증명·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/신고」 - 「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」
 - 공고일 이후 대표자 기준 발급분, 기간 설정 없이 발급

□ 문 의 처 : 성남산업진흥원 4차산업부

구 분		담 당 자	연 락 처
성남하이테크밸리 복합문화센터	창업보육& 네트워크라운지	조아라 대리	☎ 031-782-3075

【별첨】 창업여부 기준표

신청기업	상세 구분			창업여부	해당기업명
개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	창업 기본요건	
	타인으로부터 상속/증여	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		창업아님	
		이종		창 업	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-		창업아님	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 업	
		동종창업	폐업 3년 초과	창 업	
폐업 3년 까지			창업아님		
부도/파산 - 2년 초과			창 업		
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업아님				
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	-		창 업		
법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	창업 기본요건	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 업	
		동종창업	폐업 3년 초과	창 업	
			폐업 3년 까지	창업아님	
			부도/파산 - 2년 초과	창 업	
			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업아님	
		동종전환	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	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	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이종창업	-	창 업	
		동종창업	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또는 최대주주	창업아님	
			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	창 업	
	자회사 여부	법인 주주(임원 포함)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소유		창업아님	
	과점주주 여부	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% 초과 소유		창업아님	
회사형태 변경	동종유지		창업아님		
	이종		창 업		
기타	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			창업아님	
< 창업 인정 기준 참고사항 >					
※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: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 (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)이고, 양도-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, 동종 업종,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폐업 완료, 양도기업의 권·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					
※ 동종의 범위 : '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)'를 기준으로 세세분류(코드번호 5자리)가 모두 일치하면 "동종" *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: kssc.kostat.go.kr					
※ 과점주주 :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					
※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(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) : ①2020.10.8.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- "개인사업자 설립일이 '20.10.8. 이전이면서,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"한 경우 "창업"으로 판단 ②영 시행(2022.6.29.)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					